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재일 2012-1) 일부개정예규안

1. 개정이유

○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제출 가능한 멀티미디어 자료의 파일형식에 'M4A'를 추가하고, 파일 제출 용량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하고,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자제출이 용이하도록 함

2. 주요내용

- O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제출 가능한 멀티미디어 자료 파일 형식에 'M4A'를 추가함(안 제3조제1호나목)
-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제출 가능한 전자파일의 제한 용량이 10MB인 부분은 20MB로, 50MB인 부분은 100MB로 변경하여 각 현재 수치의 2배로 확대함(안 제3조제3호가목 및 제3조제3호나목)
- 3.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재일 2012-1) 일부개정예규안

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(재일 2012-1) 일부개정예규안

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재일 2012-1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나목에 "M4A"를 추가한다.

제3조제3호가목 중 각 "10MB"는 각 "20MB"로, "50MB"는 "100MB"로, 제3조제3호나목 중 "50MB"는 "100MB"로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202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 (파일 형식 등)	제3조 (파일 형식 등)
(생략)	(현행과 같음)
1. 파일 형식	1. 파일 형식
가. (생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멀티미디어 자료: AVI, WMV,	나
MPG, MPEG, MP4, ASF, MOV,	
WMA, MP3, PPT, <u>PPTX</u>	<u>PPTX, M4A</u>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용량	3. 용량
가. 1파일 당 용량은 <u>10MB</u> 를 초과하	フト <u>20MB</u>
여서는 아니 되고, 이를 초과할 경우,	
10MB 이하 크기의 파일로 나누어서	<u>20MB</u>
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멀티미디어	
자료는 1파일 당 <u>50MB</u> 까지 제출할	<u>100MB</u>
수 있다.	
나. 전자문서 1건에 첨부하여 제출하	나
는 전체 파일의 용량 합계가 <u>50MB</u> 를	1 <u>00MB</u> -
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	
다. (생략)	다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	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
연락처	(02) 3480 - 1416